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 1188 호 2019. 8. 8.(목)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184호[하천 점용 (변경)허가 고시]..... 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185호[도로명주소 부여 고시]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186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..... 4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890호[「이화·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」 공청회 개최 공고]..... 5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895호[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]..... 6

안 내	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
--------	--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홍보실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- 184호

하천 점용 (변경)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8월 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매곡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장

나. 주소 :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596번길 53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가스관 이설

4.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신천동 745-118번지 외 1필지

나. 면적 : 일시 - 297.6㎡

영구 - 당초 : 55.0㎡

- 변경 : 49.3㎡

5.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

일시 : 2019. 8. 5. ~ 2020. 2. 4.

영구 : 2021. 2. 5. ~ 2024. 12. 31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- 185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8월 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화산중앙로 외 6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**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**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9. 8. 8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	도로명주소	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
1	울산광역시 북구	매곡동 903-3	울산광역시 북구	당수골4 길 5	2019-08-08	당수나무가있는당수골 명칭사용하여서도로명 을부여함.	2017-05-04
2	울산광역시 북구	매곡중산지구 14B 2L	울산광역시 북구	신기4길 31	2019-08-08	신기3길인근위치연계성 반영하여일련번호부여	2018-05-10
3	울산광역시 북구	천곡동 541	울산광역시 북구	천곡길 172	2019-08-08	기존자연마을인천곡마 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
4	울산광역시 북구	호계동 1024-4 외 1	울산광역시 북구	당수골26 길 53	2019-08-08	당수나무가있는당수골 명칭사용하여서도로명 을부여함.	2017-05-04
5	울산광역시 북구	화봉동 1464-1	울산광역시 북구	화산중앙 로 86	2019-08-08	자연부락명칭을사용해 서도로명을부여하였다.	2010-04-27
6	울산광역시 북구	천곡동 313-5	울산광역시 북구	천곡남로 110-2	2019-08-08	천곡동전체지역의남쪽 에 위치하여 도로명을부 여하였다.	2008-03-11
7	울산광역시 북구	송정지구 B6	울산광역시 북구	박상진4 로 72	2019-08-08	독립운동가 박상진 명칭 사용	2018-05-10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- 186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8월 8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화산중앙로 86	화봉동 1464-1	2019. 8. 8.	건축물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
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
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**2019. 8. 8.**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890호

「이화·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」 공청회 개최 공고

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이화 및 화정 일원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에 대하여 『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 제15조, 『같은법 시행령』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이화·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8월 8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최 목적

- 이화·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의견 수렴

2. 일시/장소 : 2019. 8. 22.(목) 10시 /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

3. 내 용

-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경과 및 비전과 목표
- 이화·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: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계획
- 향후계획 및 운영·관리방안 등

4. 기타 사항

-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실 주민께서는 공청회에 참석하시거나 공청회 개최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방문(본관 2층), 이메일(ubdesign@korea.kr) 및 팩스(052-241-7909)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(☎052-241-7917~9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-895호

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및 『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』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8월 8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제정이유

- 「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여 자치역량 강화 및 내실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 정의 등(안 제1조 내지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, 추진계획 등

- 1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2)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자치분권협의회

- 1)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5조 내지 제8조)
- 2) 위원장의 직무, 협의회의 운영 등(안 제9조 내지 제11조)

3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

4. 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주민소통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제출처

- 주소 : 우)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주민소통실
- 전화번호 : 052)241-7262, 팩스번호 : 052)241-7269

6. 기타사항

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- 붙임 1.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
2. 관계법령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자치분권"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계획)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(이하 "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3년 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
2.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
3.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분권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과 시행
2.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
3.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
4.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1.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서장, 기획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
2.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
3. 학계, 언론계, 법조계, 시민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7조(위원의 임기) 위촉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협의회 운영) 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.

제11조(협의회 지원) ① 구청장은 협의회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지방자치분권"(이하 "자치분권"이라 한다)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, 자치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·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치분권의 기본이념)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

제46조의2(일반국민의 참여 등) 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, 정책제안,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

□ 양성평등기본법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

□ 조 례 명 :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
- 의 견 제 출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